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60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박승진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성준,
김영철, 김현기, 민병주,
서준오, 송도호, 왕정순,
우형찬, 이영실, 이용균,
전병주, 최재란 의원(14
명)

1. 제안이유

-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도 포함하도록 하여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포함 (안 제3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거주하는 주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국민기초생활수급자</u> 가 거주하는 주택	4. ----- -- <u>국민기초생활수급자</u> 및 <u>차상위계층자</u>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포함(안 제3조제1항제4호)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